

# 수출 절차

1. 수출 전 확인 사항
2. 해외바이어 발굴
3. 계약조건 협의
4. 결제방식 결정
5. 수출 원가 산정 및 수출가격 책정
6. 수출보험가입
7. 수출계약체결
8. 수출 자금의 확보
9. 선적 준비
10. 수출 통관
11. 수출 운송 및 적하보험계약
12. 원산지증명서 발급
13. 수출대금회수
14. 관세 환급
15. 클레임 처리

# 수출계약 단계별 필요 서류 및 확인 사항

## 1) 수출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수출상담단계

-수출상담 시 필요한 샘플 및 제품 관련 자료를 준비.

: 제품 샘플, 제품소개 자료가 주이고, 필요시 제품 관련한 특허/시험성적서 등 자료, CE 등 인증서 자료

- 현지 바이어가 수입 시 인증이나 허가, 승인 등 관련법규에 따른 필요요건 사항의 확인

\*식품:KATI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([www.kati.net](http://www.kati.net))> 자료> 발간자료> 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 가이드북

\*해외전시회 참가 시 지원사업

1. 지자체 기업지원과,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[www.gsba.or.kr](http://www.gsba.or.kr))의 "마케팅지원 -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, 개별참가지원 등".
2.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[www.exportcenter.go.kr]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)에서 "수출지원사업 안내"
3.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([www.smw-expo.go.kr](http://www.smw-expo.go.kr))
4.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협회(at 유통센터 등), 경기테크노파크에서
5. 기초단체 시군단위로 예산에 따라 매칭형태로 시행
6. 특정 업종별로 연합회 혹은 협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
7. 기업마당bizinfo.go.kr에서도 검색

## 2) 수출진행단계

-매매계약 성립시까지 많은 진행 단계(Offer - Counter Offer - Firm Offer - Acceptance - Formation)가 남아 있으며,  
-품질과 가격에서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FTA 특혜관세율을 적극 활용(hs code확인)

-가격/거래조건

:대금지급의 경우 선적 전 사전 결제/선적 후 사후 결제 혹은 복합 방법 결제 등 대금지급시기와 신용장 거래, TT 거래 등 대금지급 수단 협의

:INCOTERMS의 DELIVERY조건에 따라서 FOB, CIF 등 물품을 어디까지 수출 물품을 인도할 것인지, 해상(항공)운송 과정에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(INCOTERMS2010)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.

\*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([www.9988law.com](http://www.9988law.com))> 자료실> 국제분쟁 방지가이드>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

## 3) 계약 후 수출 시 서류

기본적으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Bill of Lading, Commercial Invoice, Packing List, Certificate of Origin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고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(inspection certificate등)를 요구할 수 도 있음.

# 1. 수출 전 확인 사항

## 1-1. 수출할 품목의 HS 코드 (품목분류번호)

- ▲ HS CODE 확인: "HS CODE 네비게이션"([www.trass.or.kr](http://www.trass.or.kr)) > "품목분류확인" > search에 품목 입력 > HS CODE 확인
- ▲ 관세 및 FTA 특혜관세: 관세청FTA포털 > MY 메뉴의 FTA 수입세율 > 수입국가 선택 > HS CODE 입력 > 수입관세 확인
  - \*한국무역협회 FTA 콜센터(국번없이1380) HS CODE 확인 > 수입국의 수입요건확인 > 해당 HS CODE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([www.certinfo.or.kr](http://www.certinfo.or.kr)) 접속 후 해당물품의 수입국인증제도확인 KTR 수출인증사업단 신청화면연구원 02-2164-0177 [jjeong@ktr.or.kr](mailto:jjeong@ktr.or.kr)

▲ 국가별 수입관세: [tradenav.or.kr](http://tradenav.or.kr)

## 1-2. 수출 전략 수립

- ▲ 목표시장 설정, SWOT 분석, 경쟁제품 분석, 자사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한 Sales materials(catalog 등) 준비
- ▲ 무역통계 확인: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각국의 교역량 등 확인(<http://stat.kita.net/main.screen>)
- ▲ 유관기관 수출 지원사업확인: 수혜 가능한 모든 지원사업을 연간 스케줄로 정리해서 활용(자금, 인증, 전시회,...)
  -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역량강화 사업
  - 한국무역협회 수출지원사업
  - 지자체 지원사업
  - 업종별 맞춤형 지원사업: 예: 농식품, At 센터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
  -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([www.sme-expo.go.kr](http://www.sme-expo.go.kr))

## 1-3. 해외규격인증 획득

- ▲ 수입 해당 국가의 산업규격기준을 충족하고 인증,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
  - \*해외인증정보: 해외인증정보 시스템 [www.certinfo.kr](http://www.certinfo.kr) < 해외인증자료검색 및 신청 [www.1381call.kr](http://www.1381call.kr)
  - \*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지원사업: 2월/6월/8월 공고-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<http://www.exportcenter.go.kr>)
  - \*각국의 농식품 수출정보 및 해외인증 정보: <http://www.kati.net> (AT CENTER에서 운영)
  - \*해외인증서비스(식품, 의약품, 화장품, 의료기기): [www.k-gmp.com](http://www.k-gmp.com)
  - \*할랄인증(KMF vs JAKIM/MUI): 식음료, 의약, 화장품,...

## 1-4. 수출지원 정책자금 확인

- ▲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
- ▲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
- ▲ 한국무역협회 KITA 무역진흥기금

## 1-5.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에서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지원

중소기업진흥공단 : [http://www.exportcenter.go.kr/eservice/gobizkorea/gobizkorea\\_main.jsp]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/eservice/gobizkorea/gobizkorea_main.jsp)

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+82-42-481-4355

## 1-5. 상표등록

- ▲ 각국별, 등록절차, 비용, 기간 확인
- ▲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: 다국가 1출원 시스템.출원후 12개월 내에 국가별 등록이 완료(10년 유효, 10년간 갱신)
- ▲ 해외상표등록의 국고지원: 해외지식재산센터([www.ip-desk.or.kr](http://www.ip-desk.or.kr))

## 2. 해외 바이어 발굴

-거래 제안서 발송: circular letter-> Offer -> Counter Offer -> Firm Offer

▲ 바이어 발굴 방법: Off-line 방법, On-line 방법

▲ 한국무역협회 (바이어 리스트 제공서비스)

▲ 중소기업부 (해외지사화사업)

▲ Kotra ("해외시장조사서비스-사업파트너연결지원": 해외 수입업체2~3개사 발굴 및 교신 지원, 수수료 30만원)

▲ 해외 각국의 한국대사관

▲ 전문 해외시장조사 기관: KOMPASS (<http://kompass.com>), EC21(<http://www.ec21.com>),...

▲ 국가 기업조회 사이트(예 캐나다: <https://www.ic.gc.ca/app/scr/ic/sbms/cid/searchProduct.html?lang=eng>)

### 2-1. 수입자(바이어) 신용조사

▲ 한국무역보험공사( <http://www.ksure.or.kr>) 의 수입자 신용조사서비스 이용

### 2-2. 바이어 INQUIRY입수

▲ 무역사기 조심: 샘플 사취, 가짜송금확인서, 선 생산 유도, 대형오더미끼, 이메일 해킹

## 3. 계약 조건 협의

▲ 계약서 항목: 품명(description), 수량(quantity), 가격(price), 포장방식(packing), 선적항(shipping port), 도착지(destination), 선적기일(shipment date), 결제방식(payment terms), 보험조건 (terms of insurance), 정형거래조건(trade terms), 준거법(governing laws), 중재조항 (arbitration clause )

-포워드, 관세사를 통해서 운송 및 통관 비용 확인

\*무역계약의 국제 규칙:

. CISG (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):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

. INCOTERMS 2010 (정형거래조건해석에 관한 국제규칙) : 매도인과 매수인의 제비용 부담 및 위험 이전

. ICC 중재규칙: 협약국의 중재소 결정을 피고 국가의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음. 협약국 중재소의 결정이 자신의 국가의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.

## 4. 결제 방식 결정

▲결제 시점: 선 지급, 동시 지급, 후 지급

▲ 결제수단: 송금 방식(T/T, CAD, COD), 신용장 방식(L/C), 추심 방식(D/A, D/P)혼합결제방식(Mixed payment)

▲ 결제조건 별 위험 및 미수금 방지 방법 숙지

☞결제 시점이 명확하도록 해야 함(예: 선적 후 30일 내 지불 VS 물건 도착 후 검사 완료 시 지불)

## 5. 수출원가 산정 및 수출가격 책정

▲ 수출원가: 원가구성항목, MOQ, 운송조건, 결제조건 반영, B-E분석

▲ 수출가격: 최적가격을 위한 가격전략 반영(경쟁가격, 적정마진 가격, 시장침투가격, 고가전략, ...)

## 6. 수출보험 가입

- ▲ 수출보험이란 미수금 발생이나 환률 하락으로 인해 수출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

-한국무역보험공사( <http://www.ksure.or.kr>) 중소기업 수출보험

- ▲ 중소기업 단체보험: "중소중견기업 plus보험", "수출 안전망 단체보험"
- ▲ "중소기업Plus보험 개별보험"

## 7. 수출계약 체결

- ▲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로 정해진 계약 절차나 계약서 양식이 없으며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

\*국제 계약의 성립조건(Vienna Convention(1980) 규정)

- ①매도인의 청약(OFFER)에 대한 매수인의 승낙(ACCEPTANCE)
- ②매수인이 주문(PURCHASE ORDER)에 대한 매도인의 주문 승낙(ACKNOWLEDGEMENT)
- ③매도인의 청약(OFFER)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( 대금 송금 혹은 신용장개설)
- ④매수인의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주문에 대하여 매도인의 물품 선적

- ▲ 계약체결 시 전략: 계약서 형태, 준거법/중재지, 결제조건 등에 대한 협상 상황에 따른 제시안/중립안/최종안

\*계약서 형태: 계약금액등에 따라 Firm offer 등 단순한 형태의 계약 혹은 각종 조항 포함한 Full agreement 형태 등

## 8. 수출 자금의 확보

- ▲ 중소기업진흥공단 (정책자금, 신시장 진출지원금융)
- ▲ 한국무역협회 (kita 무역진흥기금)
- ▲ 한국수출입은행 (수출금융)

## 9. 선적 준비

- ▲ 바이어가 대금을 송금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계약된 물건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거나(신용장방식의 경우) 바이어에게 직접 보내주어야 함(송금방식의 경우).

-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과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

-포장박스에 바이어의 이니셜, 도착지, 박스번호 등이 명시된 shipping mark 표시

-FTA 원산지 증명서(바이어 요구 시)

- ▲ 선적은 합의된 기일 내 완료 안되면 클레임 대상

## 10. 수출 통관

- ▲수출품이 준비되면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하기 전에 우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함.
  - 수출통관절차: 수출신고서 제출 → 수출심사 → 수출신고서 수리 → 수출신고필증 발급
  - 수출신고서 작성을 비롯해서 수출통관과 관련된 업무는 관세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음.
  - 수출신고 시 구비서류: 수출신고서(EDI 신고),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,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
  - \*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>), 관세청 통관고유부호, 한국관세사회([www.kcba.or.kr](http://www.kcba.or.kr))

## 11. 운송 및 적하보험 가입

- ▲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출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하고 선하증권(해상운송의 경우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항공운송의 경우)을 발급받음
  - 운송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포워드(운송주선인)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음
  - 적하보험은 당사자 합의에 의거 부보여부/범위 결정
  - \*Forwarder 업체 확인: 코리아쉬핑가제트([www.ksg.co.kr](http://www.ksg.co.kr))
  - 소량화물 항공운송 방법: Air courier, Air freight, 우체국 EMS

## 12. 원산지증명서 발급

- ▲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는 상대국에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 원산지증명서준비
- \*FTA 포털 (<http://www.fta.go.kr>):국가별 원산지증명서

## 13. 수출대금회수(L/C 경우)

- ▲수출대금 회수 시 구비서류
  - :수출환어음 매입 신청서, 환어음, 수출신용장 원본(L/C방식의 경우), 선하증권(B/L),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,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, 보험증권(해당 시), 원산지증명서 등(수입자 요구 시),기타 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

## 14. 관세 환급

- ▲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 시 납부한 수입관세를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환급
  - \*개별환급, 간이정액환급

## 15. 클레임 처리

- ▲무역계약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: 품질, 물량, 포장, 선적, 결제 조건 등 위반
- \*해결방법:당사자 간 해결, 제3자 개입(알선, 조정), 중재, 소송
- ☞중재: 계약서 중재 조항에 중재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명시할 경우에만 유효